부록 4. 주요 참여주체간의 계약 관계

별첨#1-1_신안산선 실시설계 제일엔지니어링 계약서 갑지
별첨#1-2_신안산선 실시설계 제일엔지니어링 과업지시서
별첨#1-3_신안산선 실시설계 단우기술단 계약서 갑지
별첨#1-4_신안산선 실시설계 단우기술단 과업지시서

별첨#2_신안산선 설계감리 계약서 등
별첨#3_신안산선 5공구 시공감리 계약서 등
별첨#4-1_신안산선 공사도급계약서
별첨#4-2_신안산선 5-2공구 공동수급운영협약서
별첨#5_신안산선 지하안전영향평가 계약서 등
별첨#6_신안산선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별첨#7_신안산선 5-2공구 터널공 하도급 계약서 (도양기업)
별첨#8_신안산선 5-2공구 계측 하도급 계약서 (이제이텍)

1-1 제일엔지니어링 계약서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전문)

1. 용역계약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설계PM및철도계획실시설계

○ 원도급 용역계약서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 발주자(원도급인)명 : 넥스트레인 주식회사

2. 용역수행 범위 : 별도 첨부문서에 따름

3. 용역기간 : 2019년 04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 납품일자 및 장소 : 별도 첨부문서에 따름

5. 계약금액 : 일금 일백삼십팔억팔천일백팔십구만원정(₩ 13,881,890,000)
○ 공급가액 : 일금 일백이십육억일천구백구십만원정(₩ 12,619,900,000)
○ 부가가치세 : 일금 일십이억육천일백구십구만원정(₩ 1,261,990,000)
※ 변경 전 계약금액 :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체결후 (15)일 이내에 (₩ 0)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 별도계약조건에따름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100%, 어음 %, 어음대체결재수단 %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7. 계약보증금 : 일금 일십삼억팔천팔백일십팔만구천원정(₩ 1,388,189,000)

8. 하자보수보증금률 : 2%

9.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 완료일(세금계산서일)로 부터 24 개월

10. 지체상금률 : 지체일당 2.50/1000

당사자는 상기의 엔지니어링활동 위탁업무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9년 04월 30일

* 원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전화번호 : 032-748-2114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대표자 성명 : [redacted]

사업자(법인)번호 : [redacted]

*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전화번호 : 02-3498-2600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19-6

대표자 성명 : [redacted]

사업자(법인)번호 : [redacted]

본 계약서는 포스코건설 홈페이지(http://www.poscoenc.com) 구매포탈(공사/용역)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전자계약서입니다.

1-2 제일엔지니어링 과업지시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19. 04.

posco
포스코건설

과업지시서 붙임 3. 분야별 과업내용

(과업명 : 철도계획 및 설계 PM용역)

제1장 세부 설계 내용

1. 공통사항

가. 본 설계 부문 성과요구수준서 및 철도설계기준 등 제 기준을 검토 및반영하여야 하며, 열차운영, 시공성, 공사비, 유지관리 용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용지비 및 사유시설물(건물, 수목 등 지장물, 영업권, 가축사육 등 무형의 권한을 포함) 보상비(이전비 등 포함)가 최소화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세부 설계 내용

가. 정거장 설계

(1) 배선계획

① 정거장 배선은 일반·급행 열차운영, 열차 취급시의 안전확보, 타 노선과의 환승체계, 장래 확장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본선 또는 정거장접속부의 경우 최소운행시격 및 일반·급행 운행에 문제점이 없도록 배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거장 배선 시 필요한 개소에는 장비유치선을 설치·검토하여야 하며 연계선 구인 월곶~판교선과 혼용 운영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노반설계에 따른 선형 및 배선계획을 시행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배선 변경 및 승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한 기존노선 운영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변경 및 승인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분기기 전·후 구간을 콘크리트궤도 구조로 설계할 경우 분기기 구조도 콘크리트궤도용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자갈궤도로 설계할 경우 분기기 전·후 충분한 연장에 대한 완충설계를 하여야 한다.

⑤ 본선 및 부본선의 분기기는 60kg PCT 탄성분기기(고정, 노스가동)를 설치할

수 있는 배선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⑥ 측선의 분기기는 50kg PCT 탄성 분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배선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⑦ 정거장 배선계획 시 전차선로 지지물의 설치공간 확보를 위하여 4～5개 선로마다 6.0m이상의 선로 중심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 열차운영계획 및 시스템을 분석하여 운영에 지장 없는 주박계획 및 이에 따른 배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승강장

① 승강장의 폭 및 길이는 교통영향평가, 철도설계기준(노반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승강장 높이는 전철전용(레일면에서 1,135mm)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③ 흙쌓기 구간에 승강장 홈블럭을 설치할 경우 부등침하로 인한 구조물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승강장 끝단은 화재, 재난 시 대피로를 설계에 반영하고 승강장 안전문 설비 제어장치, CCTV 장치 등 승무원이 취급이 용이한 설치 공간을 설계하여야 한다.

(3) 승강장 시설물의 간격

① 승강장에 세우는 조명전주・전차선전주 등 각종 기둥은 선로쪽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1.5m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승강장에 있는 역사・지하도・출입구 등 벽으로 된 구조물은 선로쪽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2.5m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승강장 연단에는 승강장 안전문 설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④ 승강장 내에는 기능실이나 휴게실을 가급적 설치하지 아니한다.

⑤ 승강장 연단과 차량과의 간격은 50mm의 간격을 띄어 설치한다.

⑥ 가급적 승강장 궤도는 직선을 유지하며 곡선화가 불가피한 경우 발빠짐 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4) 지상 돌출시설

외부출입구, 환기구 등의 지상돌출시설물은 원활한 보행통로 확보, 시각차단 불편 최소화, 도시미관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용지 등 주변 공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역전 광장시설

관련법규(기준)에 따라 설치 시, 역사본체의 전면은 항상 여객과 차량의 집산이 원활하며, 타 교통시설과의 연결이 편리하도록 계획하고 다음 시설을 계획한다.

① 자동차의 Park & Ride 시설 : 가감속차로, 신호, 주차시설

② 주차장, 자전거 보관소, 휴게공간 등

③ 기타 부대시설

- 구내배수는 유량을 감안하여 표면 배수로를 설치한다.
- 울타리는 전 구간에 설치하여 하며, 울타리의 형식은 지역에 맞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지축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측 선로중심에서 4.0m로 한다.
- 선로사이의 재료운반을 위한 정거장 구내 도로는 5.0m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나. 설계 PM

(1) 수급인은 실시협약 성과요구수준서 및 본 과업지시서를 준수하고, 관련법규 및 각종 시방서, 관계기관 협의내용 등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설계기간 중 각종 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그 적용여부는 수급인과 도급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수급인은 합동사무실을 운영한다.

(4) 수급인은 실시설계 시 주요 설계 적정성 검토(자문, 설계VE,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등)에 대한 일정 관리 및 업무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5) 수급인은 주부관청 및 관계기관, 도급인이 요청하는 보고자료 작성한다.

(6) 수급인은 실시협약서에 명시된 일정에 맞추어 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승인 신청서를 작성한다.

(7) 수급인은 각 분야별 설계의 성과물, 공정 등의 전체적인 설계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8) 기타사항

① 탄약고 안정성 평가

시공 시 터널굴착으로 인한 진동이 지반 상부의 저장탄약고에 미치는 영향 및

탄약고의 우발적 폭발에 따른 통과열차의 안정성 검토를 수행한다.

②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작성 및 협의 등을 수행한다.

③ 연도변 조사

노선대 인접 건축물의 현황 파악 및 건축물의 상태등급 확인 후 검토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한다.

④ 공사관리 및 공정계획

- 연계선 개통시기, 용지보상 기간, 토공 조건 등을 고려한 공사관리 및 공정계획을 수립해야하며, 투입 인력은 합사에 상주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단, E&M 담당자 투입 必)
- 공정계획은 CPM기법 등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보유한 사업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이 가능하고, 진도율 및 기성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공정계획 종합공정계획 설명서, 마스트 스케쥴, 상세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종간 전후관계, 공사내역과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 종합시공계획서는 사업수행계획, 공사계획, 자원투입계획, 품질관리계획, 공정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 및 민원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수리수문 분석

노선대 주변의 전반적인 수리수문 검토와 시화호 통과구간에 대한 2 · 3차원 수리해석 등을 수행한다.

⑥ 소음 · 진동 영향평가

운영 중 주요구간에 대한 소음(3차원) 및 진동(2차원) 해석 등을 수행한다.

⑦ 설계 위험성 평가

설계 시 시공단계의 공종별 위험성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 및 재해 특성을 검토하여 저감대책 수립 등을 수행한다.

⑧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고공람 자료작성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고 · 공람을 위한 자료 작성 등을 수행한다.

⑨ 운영 중 하수처리 계획

- 시공 및 운영 단계에서 정거장, 수직구 등의 유출/유입 지하수, 오폐수 처리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경제적인 관로 계획 등을 수립한다.

- 지하수 방류에 다른 원인자 부담금 미발생, 공사 초기에 인근하천, 우수관 연결을 기본 방향으로 설계하며 하수처리비 vs 하천방류 관로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한다.

⑩ Smart PMIS 도입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사업관리 업무를 On-Line에서 구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며, 사업수행을 위한 모든 조직의 문서 유통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사용을 확산한다. 단, 향후 시공·운영단계에서도 모든 사업수행 조직(사업단,시공사,설계사,감리자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MS windows 환경의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Android와 IOS의 모바일 사용 구현을 포함한다.

1-3 단우기술단 계약서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전문)

1. 용역계약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터널분야(여의도~광명)실시설계

○ 원도급 용역계약서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 발주자(원도급인)명 : 넥스트레인 주식회사

2. 용역수행 범위 : 별도 첨부문서에 따름

3. 용역기간 : 2019년 04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 납품일자 및 장소 : 별도 첨부문서에 따름

5. 계약금액 : 일금 칠십칠억오천삼백구십만원정(₩ 7,753,900,000)
○ 공급가액 : 일금 칠십억사천구백만원정(₩ 7,049,000,000)
○ 부가가치세 : 일금 칠억사백구십만원정(₩ 704,900,000)
※ 변경 전 계약금액 :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체결후 (15)일 이내에 (₩ 0)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 용역완료후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100%, 어음 %, 어음대체결재수단 %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7. 계약보증금 : 일금 칠억칠천오백삼십구만원정(₩ 775,390,000)

8. 하자보수보증금률 : 2%

9.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 완료일(세금계산서일)로 부터 24 개월

10. 지체상금률 : 지체일당 2.50/1000

당사자는 상기의 엔지니어링활동 위탁업무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9년 04월 30일

* 원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전화번호 : 032-748-2114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대표자 성명 : [redacted]

사업자(법인)번호 : [redacted]

*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주)단우기술단

전화번호 : 02-423-1237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동, 테라타워) A동 1513-1517호

대표자 성명 : [redacted]

사업자(법인)번호 : [redacted]

본 계약서는 포스코건설 홈페이지(http://www.poscoenc.com) 구매포탈(공사/용역)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전자계약서입니다.

1-4 단우기술단 과업지시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19. 04.

posco
포스코건설

과업지시서 붙임 3. 분야별 과업내용(터널, 구조, 가시설)

1. 공통사항

가. 본 설계 부문 성과요구수준서 및 철도설계기준 등 제 기준을 검토 및 반영하여야 하며, 열차운영, 시공성, 공사비, 유지관리 용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용지비 및 사유시설물(건물, 수목 등 지장물, 영업권, 가축사육 등 무형의 권한을 포함) 보상비(이전비 등 포함)가 최소화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교량~토공, 토공~터널구간 등 노반강도가 변화하는 접속부에 궤도 시스템 적용을 위한 요구조건 및 보강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암매각 비용은 상차도로 반영하고, 암매각 운반비 및 매각 비용은 사후 정산처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마. 출입시설, 환기구, 특별피난계단 등 수직구 계획은 작업여건을 고려한 부지확보, 시공 전체공정을 고려한 공법선정, 터널 및 수직구 시공계획을 고려한 굴착토 및 버력처리 계획, 주변지반 침하대책 및 정온한 공사계획 등을 반영한 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바. 수직구 공법 선정은 절대 공기를 준수하기 위한 필수 공정임으로, 국내 및 해외 기술, 신기술 및 특허 등 선진기술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신안산선의 절대공기와 사업비에 부합되는 공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과업내용

가. 주요 과업내용

(1) 과업구간

구분	단우	삼보	이원
터널 및 정거장, 수직구 내부구조 설계	광명 ~ 여의도 구간 한기(현)13km940 ~ 한기(현)30km631 L=15.6km	한양대 ~ 광명 구간 한기(현)0km000 ~ 한기(현)13km940 L=13.9km 한기(현)15km353 ~ 한기(현)16km373 L=1.0km	시흥시청 ~ 광명 구간 송기(현)14km990 ~ 송기(현) 24km682 L=9.7km STA0km000 ~ STA1km256 L=1.3km
구조 및 가시설 설계		한양대 ~ 여의도 구간 및 시흥시청 ~ 광명 구간	

(2) 터널 분야

(가) 터널 설계 PM은 단우기술단에서 담당

(나) 본선터널(NATM), 터널 정거장 계획

(다) 공사 및 운영을 고려한 수직구 계획

(라) 주요구간 통과방안 및 안정성 검토

(마) 터널 정거장 및 대합실 연결 방안

(바) 공사용 기계 및 전기설비 계획

(사) 기타 터널설계와 관련한 실시계획 승인 서류

(아) 발파 진동, 소음 영향 평가

(3) 구조 분야

(가) 구조분야 PM은 삼보기술단에서 담당

(나) 본선구간 및 환승통로의 개착박스 및 비개착박스 설계

(다) 환승통로의 보도육교 설계

(라) 개착정거장 구조물 설계

(마) 터널정거장의 개착대합실 구조물 설계

(바) 터널정거장의 수직구 상부 환기 구조물 설계

(사) 터널정거장의 수직구 내부구조물 구조검토

(아) 터널정거장의 승강장 및 데크, 슬라브 구조검토

(자) 본선환기구 개착 환기실(팬룸) 설계

(차) 기존 구조물 내하력 평가

(카) 기존 구조물 철거

(타) 기타 구조설계와 관련한 실시계획 승인 서류

(4) 가시설 분야

(가) 가시설분야 PM은 삼보기술단에서 담당

(나) 주요 구조물 가시설 공법 검토

(다) 적용토압 및 수압 검토

(라) 차수공법 검토

(마) 개착정거장 가시설 설계

(바) 개착본선 가시설 설계

(사) 수직구 가시설 설계

(아) 지장물 보호대책 수립

2. 설계감리 계약서

기술용역표준계약서

계약번호 : 제 2019-100 호

공고번호 : 제2019-02-000414-00호

	발주자(Ⅰ) (사업시행자)	상 호	넥스트레인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redacted]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0, 401호		
		대 표 자	[redacted]	전 화 번 호	02-3397-9000
계약자	계약상대자 (대표자 : 토목 51%)	상 호	㈜대한콘설탄트	사업자등록번호	[redacted]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9 (필운동)		
		대 표 자	[redacted]	전 화 번 호	02-735-5249
	계약상대자(1) (공동수급인 : 토목 49%)	상 호	(주)동일기술공사	사업자등록번호	[redacted]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0길 7 (문정동)		
		대 표 자	[redacted]	전 화 번 호	02-3400-5633
	계약상대자(2) (공동수급인-궤도)	상 호	[redacted]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38-1 (당산동 1가)		
		대 표 자	[redacted]	전 화 번 호	02-790-6625
	계약상대자(3) (공동수급인-건축)	상 호	[redacted]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학로 180(지산동)		
		대 표 자	[redacted]	전 화 번 호	053-780-9035
	계약상대자(4) (공동수급인 -기계,검수)	상 호	[redacted]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81(용두동)		
		대 표 자	[redacted]	전 화 번 호	02-586-9418

계약내용	용 역 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금액(VAT포함)	금 일십팔억구천사백구십사만원정(₩1,894,940,000)
	계 약 보 증 금	금 이억팔천사백이십사만일천원정(₩284,241,000)-계약금액의 15%
	지 체 상 금 율	계약금액의 2.5 / 1,000
	계 약 기 간	2019. 09. 26. ~ 2020. 03. 24. (착수일로부터 180일)
	위 치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안양시 일원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일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붙임서류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총민간투자비중 물가변동분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주무관청에서 인정받은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함
	기 타 사 항	1.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관련서류 중 발주청, 발주자 등 용역발주자의 의미로 사용된 용어는 넥스트레인 주식회사를 단독으로 의미하거나 넥스트레인 주식회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함. 2. 용역계약 일반조건에도 불구하고, 기성검사 및 대가의 지급은 발주자의 자금조달 일정에 맞추어 매 분기마다 1회씩 실시키로 함.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기술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용역계약특수조건 1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3. 과업지시서 1부.
4. 공동수급협정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 그 외 관련 서류는 KR전자조달 공고번호 2019-02-000414-00에 준한다.

2019년 09월 26일

발주자(甲)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0, 401호
넥스트레인 주식회사
대표자: [redacted]

계약상대자 (대표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9
㈜대한콘설탄트
대표자: [redacted]

계약상대자 (공동수급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0길 7
㈜동일기술공사
대표자: [redacted]

계약상대자 (공동수급인) [redacted]

계약상대자 (공동수급인)

계약상대자 (공동수급인)

2-1_신안산선 설계감리 과업지시서

4)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실시협약 및 실시협약의 부록1(성과요구수준서),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을 감독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실시체계, 설계계획 검토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의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사업관리 업무현황을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등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사업시설 설계에 대하여 실시협약의 부록1 (성과요구수준서)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설계의 시행 전반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확인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7) 사업시행자는 설계자 및 그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된 실시협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지시에 의하여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상 필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구하는 제반자료를 수정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용역기간

1)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은 실시협약에서 정한 실시설계기간 및 사업시행자의 설계계획에 따라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수행하며, 실시설계 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용역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실시협약에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사업관리 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3. 과업세부사항

3.1 공통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성과요구수준서, 실시협약서, 협상에 따른 주무관청과의 합의사항, 사업비 및 종합공정 등이 실시설계 및 사업실시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별도 보고시 사업시행자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동 사업노선과 연계하는 노선신설계획 등을 검토,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 및 실시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문구 등 기타 설계관련 서

류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을 해석한다.

(1) 실무협상반 회의록

(2) 소실무위원회 회의록

(3) 사업신청서의 제반서류(설계도서 포함)

(4) 질의 답변서

(5) 시설사업기본계획

(6) 정부 기본설계

4. 합동사무실 운영

4.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용역의 업무수행 및 효율적인 용역관리를 위해 합동사무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합동사무실 위치는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2 합동사무실에는 용역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집기, 전산장비, 전력 및 통신시설, 기타 제반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3. 합동사무실의 참여인원 및 사무실 규모는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합동사무실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5 합동사무실에서는 분야별 공통사항, 인터페이스 사항을 총괄하며 다음사항을 주재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1) 설계 공정관리 및 공정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2) 분야별 상호 인터페이스 협의

3) 분야별 설계기준 및 건설사업관리 체크리스트 작성 및 검토

4)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제반업무

5) 기타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가 지시한 사항

3. 시공감리계약서

기술용역표준계약서

계약번호 : 제2019-106호

공고번호 : 제2019-02-000527-00호

	발주자(Ⅰ) (사업시행자)	상 호	넥스트레인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redacted]
		주 소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72 광명국제무역센터 C동 303호		
		대 표 자	[redacted]		
계약자	계약상대자(1) (공동수급대표자) (40%)	상 호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redacted]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4길 8, 4층(반송동, 성원프라자)		
		대 표 자	[redacted]		
	계약상대자(2) (공동수급인) (30%)	상 호	주식회사 삼보기술단	사업자등록번호	[redacted]
		주 소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63, 7층(정평동, 킴스메디빌빌딩)		
		대 표 자	[redacted]		
	계약상대자(3) (공동수급인) (30%)	상 호	주식회사 서현기술단	사업자등록번호	[redacted]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00(관양동, 서현빌딩 8, 9, 10, 11층)		
		대 표 자	[redacted]		

계약내용		
	용 역 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제5공구 노반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금액(VAT포함)	금 일백삼십팔억사천만원정(₩13,840,000,000)
	계 약 보 증 금	금 이십억칠천육백만원정(₩2,076,000,000)-계약금액의 15%
	지 체 상 금 율	계약금액의 2.5 / 1,000
	계 약 기 간	2019.12.04.~2025.01.03.
	위 치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안양시 일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붙임서류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총민간투자비중 물가변동분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주무관청에서 인정받은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함
	기 타 사 항	1.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관련서류 중 발주청, 발주자 등 용역발주자의 의미로 사용된 용어는 넥스트레인 주식회사를 단독으로 의미하거나 넥스트레인 주식회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2.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에도 불구하고, 기성검사 및 대가의 지급은 발주자의 자금조달 일정에 맞추어 매 분기마다 1회씩 실시키로 함.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기술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용역입찰유의서 1부.
2. 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3. 용역계약특수조건 1부.
4.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1부.
5. 공동수급협정서 1부.
6. 산출내역서 1부.

2019년 12월 4일

발주자(ㅣ)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72, C동 303호
넥스트레인 주식회사
대표자: [redacted]

계약상대자 (공동수급대표자)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4길 8, 4층(반송동, 성원프라자)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redacted]

계약상대자 (공동수급인)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63, 7층(정평동, 킴스메디빌빌딩)
주식회사 삼보기술단
대표자: [redacted]

계약상대자 (공동수급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00(관양동, 서현빌딩 8, 9, 10, 11층)
주식회사 서현기술단
대표자: [redacted]

2. 과 업 내 용 서

Ⅰ.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제5공구 노반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한다.

2. 용역개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제5공구 노반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이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용역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1개월

4. 과업의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및 준수사항

1) 관계법령, 규정, 제반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나)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라) 본 용역 계약문서
   마)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자재공급자간의 계약문서
   바) 공단의 제규정, 절차서, 지침서 및 각종 시방서
   사)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아)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 법령 및 규정 등

※이하『책임감리원』,『감리원』,『기술지원감리원』,『감리전문회사』는 각각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8-385호, 2018.07.01.) 제2조(정의) 6호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5호 및 7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9호에 따른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4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말한다.

2) 해당 설계도서 등의 철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설계와 시공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설계개념의 실현을 위한 내용이 시공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공단의 내규 및 방침에 의거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업체 평가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 중 노반공사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시행자 및 공단에 통보하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원을 받아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실시계획, 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사항에 대하여 검토 분석을 통하여 협의내용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초기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검토 중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대책 및 해결방안을 사업시행자 및 공단에 제시하여야 한다.
6) 품질문서를 비치,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세부양식은 공단 및 공단에 의해 승인 또는 각종 관련법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하며, 현장의 특수한 실정과 사업시행자 및 공단의 형편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준공 후 일체의 품질기록 문서는 사업시행자 및 공단에 인계되어야 한다.
7) 시공자와 분쟁이 있을 경우 관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공단이 협의한 조정에 따라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자는 관련분야(노반, 건축, 전기, 신호, 전기, 궤도, 통신, 차량) 회의를 통하여 설비간 전기적 또는 물리적 인터페이스 내용 등을 검토하고 타 설비와 인터페이스 및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자는 예상되는 설비간의 부조화와 현실적인 상호간섭 영향에 대한 검토 및 설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상호 간섭으로 부조화가 발생 시 경미한 사항은 관련분야 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공단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합동으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공단에게 보고하고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본 사업의 원활한 공사 추진 및 공정관리 등을 위한 통합책임건설사업관리자(특급 1) 및 통합관리원(고급1, 중급1)을 선임하고, 선임공구로써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업무와 역할은 사업시행자 및 공단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11) 통합책임건설사업관리자는 전 공구 공통사안에 대하여 공구별로 이견이 있는 경우 협의 조정할 의무를 가지며, 각 공구별 책임건설사업관리자는 통합책임건설사업관리자의 중재안에 따라야 한다.

12) 과업내용서와 상기 1)항 바), 사)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과업내용서가 우선한다.

나. 과업의 분담 및 책임사항

1)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한 인수는 관련규정 및 사업시행자와 공단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인수받은 부분과 연계되는 계속공사는 안전성, 신뢰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설계변경 사항 중 노반공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원설계자의 검토의견을 받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범위 및 책무

1) 기본임무 및 지위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과업대상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 안전, 원가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하며 민간투자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 및 공단의 감독 및 검사업무를 대행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수칙

가) 근무자세

(1)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4) 공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5)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나) 근무수칙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변경하거나 기한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사업시행자 및 공단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해결하여야 한다.

(4)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및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공단 혹은 공사관리관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5)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당일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등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하여 대체근무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업시행자 및 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사업시행자 및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사업시행자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야간근무로 인한 초과근무 시 대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의 돌발 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및 공단과 협의 후 당직근무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돌풍, 폭우 등의 재해가 예상되어 공단의 특별근무 요구 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조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주요 업무범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 등에 따라 아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시협약 제3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

2) 기술자문 등 기술심의에 관한 사항의 검토
3)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의 검토
4) 실정보고, 설계변경, 총사업비의 검토
5) 설계기준, 시공 개선방안 등 적용의 검토 및 보고
6) 착공보고서, 공사착수 및 공사기간 연장 등의 검토
7) 공정계획 검토 및 보고, 부정공정 만회대책의 검토 보고
8)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방안의 검토
9) 시공자 선정 및 변경에 따른 계약내용의 타당성 확인
10) 하도급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공사·안전·환경·품질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점검, 기타 제반 준수사항의 확인 및 관리
12) 위험물 처리의 검토
13) 기성검사 등 각종 검사에 관한 사항
14) 건설보조금 지급신청의 적정성 검토
15) 예비준공보고서 검토 및 예비준공검사 준비
16)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의 검토
17) 준공시설물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 및 지원
18) 보험계약서 및 수령내역의 검토
19) 기타 실시협약,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 등을 근거로 사업시행자 및 공단이 지시 또는 요청하는 사항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가)항의 규정된 업무 외에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협약, 민간투자법령,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등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최소자격기준 및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단 구성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제시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4-1 공사도급계약서

공 사 도 급 계 약 서

계 약 번 호	제2019-01호		
공 사 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계 약 금 액	일금 삼조일천이백사십육억삼천오백구십만원정		(₩3,124,635,900,000)
	• 공급가액	: 일금 삼조일천이백이십사억일천팔백만원정	(₩3,122,418,000,000)
	조사비	: 일금 칠십일억오천이백만원정	(₩7,152,000,000)
	설계비	: 일금 오백구십구억삼천팔백만원정	(₩59,938,000,000)
	공사비	: 일금 이조팔천이백삼십억삼천구백만원정	(₩2,823,039,000,000)
	사전재해영향성검토비	: 일금 삼억일천사백만원정	(₩314,000,000)
	공사중교통소통대책비	: 일금 사억삼천오백만원정	(₩435,000,000)
	가스안전영향평가비	: 일금 이억육천오백만원정	(₩265,000,000)
	에너지사용계획비	: 일금 이억칠천구백만원정	(₩279,000,000)
	경영정보시스템비	: 일금 팔십억원정	(₩8,000,000,000)
	SE비용	: 일금 일백오억사천구백만원정	(₩10,549,000,000)
	경관디자인심의비	: 일금 구천오백만원정	(₩95,000,000)
	통신유도대책비	: 일금 오억육천사백만원정	(₩564,000,000)
	임대용지 위탁비	: 일금 일억칠천구백만원정	(₩179,000,000)
	물가변동비	: 일금 이천일백일십육억구백만원정 (2013.12.31 기준에서 2018.10.31까지 물가상승분)	(₩211,609,000,000)
	• 부가세	::일금 이십이억일천칠백구십만원정	(₩2,217,900,000)
계 약 보 증 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지 체 상 금 율 (1일당 지체상금)	지체일수 × 계약금액(기성부분 제외)의 0.1%		
물 가 변 동 계 약 금 액 조 정 방 법	물가변동비는 한국은행이 간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이하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해 조정		
착 공 년 월 일	실시계획 승인 시 결정		
공 사 기 간	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 (실시협약에 따른 공사기간 변경시 그 변경기간을 반영하여 조정)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 ~ 실시협약에 따른 준공일		
하자담보책임기간, 보 증 금 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및 제72조에 의함		

1.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이하 "본 사업")의 건설공사를 위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사도급계약("본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본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 계약보증금의 납부 방법이나 납부시기 등을 포함하여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에는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 및 공동수급협정서 등 관련 계약들이 포함됨)은 향후 승인될 본 사업 실시계획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한다.

3. 발주자가 향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해지 되는 것으로 하며, 자동해지 되는 경우 사전 시공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시 계약상대자의 지분율에 따라 정산한다.

4. 본 계약에 대해 재무적 투자자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본 계약을 수정, 보충, 변경하기로 한다.

2019년 2월 25일

계약자	발 주 자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0, 401호		
		상 호	넥스트레인(주)	전화번호	070-4216-7310
		대 표 자	대표이사 [redacted]		
	계약상대자 (32.0%)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상 호	(주)포스코건설	전화번호	032-748-2114
		대 표 자	대표이사 [redacted]		
	계약상대자 (20.0%)	주 소	[redacted]		
		상 호			
		대 표 자			
	계약상대자 (10.0%)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46번길 4		
		상 호	㈜서희건설	전화번호	02-3416-6700
		대 표 자	대표이사 [redacted]		
	계약상대자 (8.0%)	주 소	[redacted]		
		상 호			
		대 표 자			
	계약상대자 (7.0%)	주 소			
		상 호			
		대 표 자			
	계약상대자 (5.0%)	주 소			
		상 호			
		대 표 자			
	계약상대자 (3.0%)	주 소			
		상 호			
		대 표 자			
	계약상대자 (3.0%)	주 소			
		상 호			
		대 표 자			

계약자	계약상대자 (2.0%)	주 소	[redacted]
		상 호	
		대표자	
	계약상대자 (2.0%)	주 소	
		상 호	
		대표자	
	계약상대자 (2.0%)	주 소	
		상 호	
		대표자	
	계약상대자 (2.0%)	주 소	
		상 호	
		대표자	
	계약상대자 (2.0%)	주 소	
		상 호	
		대표자	
	계약상대자 (2.0%)	주 소	
		상 호	
		대표자	

붙임. 공사도급계약 계약상대자별 도급금액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계약상대자	도급금액	비 고
합 계	3,124,635,900,000	
(주)포스코건설	999,883,488,000	
[redacted]		
㈜서희건설	312,463,590,000	
[redacted]		

4-2 신안산선 5-2공구 공동수급운영 협약서

공동수급운영협약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2공구)

2022. 4. .

[공동수급체 운영에 관한 기본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넥스트레인㈜에서 발주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2공구 건설공사(이하 '본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주식회사 서희건설이 공동으로 수급, 시공(공동이행방식)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 사 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건설공사
2. 공사금액(2013년 12월 31일 불변가격, 공통부대비 포함, 부가세별도) :

금 삼천사백팔십삼억팔천칠백육십만팔천원정(₩348,387,608,000-)

물가상승분(2021년 11월말까지 물가상승분 반영, 부가세별도) :

금 삼백구십일억팔천사백이십일만일천원정(₩39,184,211,000-)

공사금액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전체 도급공사금액 중 5-2공구 구성원의 출자비율(11.7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 공사의 도급내역서상의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공사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발 주 자 : 넥스트레인 주식회사

제2조(공동수급체의 명칭 등)

① 공동수급체의 명칭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공동수급체(이하 '공동수급체'라 한다.)이라 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및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고, 출자비율은 공사금액의 증감 등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않는다.

1.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한성희) : 출자비율 65.626%
2. 주식회사 서희건설 (대표이사 김팔수) : 출자비율 34.374%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주식회사 포스코건설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동수급체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9-10번지로 한다. 다만, 본 공사 준공 이후에는 대표자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구성원간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동시에 발주자와의 본 공사 도급계약(이하 '본 도급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본 도급계약의 이행완료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5. 지하안전영향평가 계약서

기 술 용 역 계 약 서

계약자	발 주 자	• 법 인 명 칭 : 넥스트레인주식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 108-88-01112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0, 401호(관양동 안양금융센터) • 대 표 자 : 김 현 모 • 전 화 번 호 : 070-4216-7310
	계 약 상 대 자	• 법 인 명 칭 :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 [redacted]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6길 22-6(양재동) • 대 표 자 : [redacted] • 전 화 번 호 : 02-3498-2600 • 법 인 명 칭 : ㈜삼보기술단 • 사업자등록번호 : [redacted] •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63(정평동, 7층, 킴스메디빌빌딩) • 대 표 자 : [redacted] • 전 화 번 호 : 053-811-7200 • 법 인 명 칭 : [redacted]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대 표 자 : • 법 인 명 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대 표 자 :
계약내용	용 역 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위 치	• 한양대역~광명역~여의도역, 시흥시청역~광명역
	계 약 금 액	• 일금 이십삼억팔천사백이십오만원정(₩2,384,250,000) - 공급가액 : 일금 이십일억육천칠백오십만정(₩2,167,500,000) - 부가가치세 : 일금 이억일천육백칠십오만정(₩216,750,000)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 ~ 실시계획 최종승인 - 실시계획 승인 일정에 따라 계약종료시점은 변경될 수 있음
	계 약 보 증 금	• 계약금액의 10%
	대 금 의 지 급	•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9조에 의함
	지 체 상 금 율	• 0.125%/일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과업지시서 1부.
4. 내역서 1부.

2019년 02월 08월

발 주 자 : 넥스트레인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현 모 (인)

계 약 상 대 자 :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redacted]

계 약 상 대 자 : ㈜삼보기술단 대표이사 [redacted]

계 약 상 대 자 : [redacted]

계 약 상 대 자 :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 1 조 (총 칙)

본 계약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추진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주자가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을 계약하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신의성실로써 상호 협조하여 당해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다음의 각호 문서들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문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계약을 해석한다.

1. 기술용역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3.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4. 과업지시서
5.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과 달리 정하는 문서
6. 발주자가 승인한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계획서 및 용역공정표

제 3 조 (관련법규 준수 및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한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 안전관리를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재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본 용역의 범위, 내용 및 추진일정은 첨부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성과품의 품질과 공정상의 일정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련기관(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 본 사업 노선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 대책을 수립하고, 발주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대관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제 4 조 (과업의 범위와 조건)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용역의 범위와 내용은 별첨 과업지시서와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실시계획 최종승인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 인허가 승인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상위계약문서(시설사업기본계획, 사업계획서, 국토교통부와 발주자간 실시협약 등)를 숙지하고 용역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용역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충분한 경력과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표 1】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금액

(VAT 별도)

구 분	지하안전영향평가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348,500,000원
㈜삼보기술단	519,700,000원
[redacted]	206,400,000원
	107,900,000원
계	1,182,500,000원

③ 수리특성시험 및 공동조사 계약금액은 【표 2】에 의한다.

【표 2】 수리특성시험 및 공동조사 용역금액

(VAT 별도)

구 분	수리특성시험 및 공동조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985,000,000원

* 수리특성시험 및 공동조사항목은 수량 증감에 따른 정산조건임.

④ 본 계약금액의 지급은 【표 3】에 의한다.

【표 3】 용역금액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VAT 별도)

구 분	비율	금 액(원)		지 급 조 건
1차 기성금	70%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933,450,000	실시계획 승인 및 발주자 자금확보 완료
		㈜삼보기술단	363,790,000	
		[redacted]		
		합계	1,517,250,000	
준공금	30%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400,050,000	실시계획 최종승인 (과업지시서를 충족하는 용역성과물의 최종승인) 완료
		㈜삼보기술단	155,910,000	
		[redacted]		
		합계	650,250,000	
계	100%		2,167,500,000	

※ 실제 금액지불은 지불 시점에서 발주자의 대외자금 지불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 안 산 선　　복 선 전 철　　민 간 투 자 사 업

과 업 지 시 서

(지하안전영향평가)

2019. 02.

넥스트레인주식회사

(2) 수리특성시험

가) 지하수 관련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 굴착 대상지역 및 광역 지하수거동 분석을 토대로 사업 전·후의 지하수위, 유출량, 유동특성 등을 파악하여 굴착에 의한 지하수 흐름을 검토한다.

㉠ 단계양수시험결과를 분석하여 투수량계수, 투수계수, 저류계수등을 산정

㉡ 순간충격시험은 경과시간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량을 측정하여 대수성 수리상수 산정

㉢ 지하수 유향유속시험을 실시하여 지하수의 유동 경로 및 거동 속도를 측정

(3) 공동조사(3D GPR탐사)

가) 3D GPR탐사를 수행하여 포장층 하부에 예상되는 지반이완 및 공동의 발생여부, 위치, 심도 및 지층분포 특성 등을 파악한다.

나) GPR 탐사 결과 지하매설물 및 공동으로 확인된 위치는 지장물 및 공동에 대한 피해 방지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4. 평가사별 업무범위

담당평가사	업무범위	비 고
㈜제일엔지니어링	지하안전영향평가 총괄	
㈜삼보기술단	· 본선터널 : 한기(현)0km000.00~한기(현)13km940.00 · 정거장 : 한양대, 호수, 중앙, 성포, 목감, 광명(개착), 시흥시청(개착) · 환기구 : #1~4(수직구), #5(개착), #6(광명정거장 포함), #7(개착),#11(개착) · 개착 전구간 가시설	
[redacted]	· 본선터널 : 한기(현)13km940.00~한기(현)30km625.47 · 정거장 : 석수, 시흥사거리, 독산, 구로디지털단지, 대림삼거리, 신풍, 도림사거리, 영등포, 여의도 · 환기구 : #8~9(수직구)	
[redacted]	· 본선터널(단선):송기(현)14km990.00~송기(현)15km482.20 · 본선터널(복선):송기(현)15km482.20~송기(현)24km769.39 · 본선터널(직결선):송기(현)0km104.84~송기(현)1km265.84 · 환기구 : #10(수직구), #12~16(수직구)	

· 평가사별 업무범위는 최종 설계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계약서

용 역 계 약 서

계 약 번 호
제2020-011호

계약자	발 주 자	•법인명칭 : 넥스트레인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108-88-01112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72, 광명국제무역센터 C동 303호 •대표자 : 김일평
	계약상대자(1) (공동수급대표사) (5 5 . 0 0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식회사 삼보기술단 •사업자등록번호 : [redacted]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63(정평동 7층, 킴스메디빌빌딩) •대표자 : [redacted]
	계약상대자(2) (공 동 수 급 사) (4 5 . 0 0 %)	[redacted]
계약내용	계 약 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용역
	계 약 금 액	금3,852,000,000원정(일금삼십팔억오천이백만원정,부가세포함)
	총용역부기금액	금3,852,000,000원정(일금삼십팔억오천이백만원정,부가세포함)
	계 약 보 증 금	금385,200,000원정(일금삼억팔천오백이십만원정)
	지 연 배 상 금 률	0.25%(1,000분의 2.5)
	계 약 기 간	2020.06.30.부터 2024.12.31.까지(54개월)
	위 치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 구간(전체)
	기 타 사 항	

넥스트레인주식회사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따라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2020.06.30.

넥스트레인주식회사 대표이[redacted]

주식회사 삼보기술단 대 표 [redacted]

[redacted]

2.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①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의하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협의시 보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를 보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협의 완료시까지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지침

① 일반조건

가) 본 과업내용서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관련 건설사업 수립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00호, '18.4.)」 등 관계법령과 각종지침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관련 실시설계 및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국토관리청 지하안전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협의(검토) 시 부실판정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시 지하안전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에 전문가와 관련기관 및 발주기관의 의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협의 및 검토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검토)과정상 또는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는 지반, 토목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또한 다양한 분야로 실제 필요한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통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상기 용역과 관련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의 중점검토 항목 및 전략사항과 상호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에 대한 상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자료작성(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포함)에 협조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 중 현황분석 등에 사용되는 관련 소프트웨어는 일관성 있게 사용하여 분석토록 하고, 성과품 납품 시 사용된 모든 소프트웨어 결과 등은 명확하게 정리하여 CD 또는 USB로 제작하여 납품토록 한다.

차)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최근의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주요자료는 도표화하여 시각적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카) 과업수행 상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다.

타) 과업수행의 공정은『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관련 시공계획을 고려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료교환 및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과업내용서·지시사항·협의결과 등에 대한 해석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특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본 사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 위임할 수 없다.

나)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을 승인하였다 하여, 그러한 승인이 계약상대자로 인한 계약상 책임이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자 및 그의 대리인, 고용인 또는 노무자의 행위, 계약불이행, 태만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4.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작성

①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자료와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기초자료로 하여 조사를 수행하며, 필요시 추가 현장조사나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요약문
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대상사업의 개요
다)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대상지역의 설정
라) 지반 및 지질 현황
마)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바) 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및 이행여부 검토
사) 지반안전성 검토
아) 종합 평가 및 결론
자) 부록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자료
- 용어 해설
-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 지반안전성 계측 및 수치해석 검토 자료
- 조사서 작성 시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②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대상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한다.
나) 대상사업의 범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제출일자 및 실시 기간을 명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③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대상지역의 설정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대상지역의 설정은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설정한 대상지역을 바탕으로 지하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하고, 그 내용을 표시하여 보고서에 함께 제시한다.

④ 지반 및 지질 현황
가) 지반 및 지질 현황은 지하안전영향평가 시 획득한 자료를 검토하고, 시공 중에 확인된 지반 및 지질 현황이 지하안전영향평가 자료와 상이할 경우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 시공 중 확인된 지반 및 지질 현황과 지하안전영향평가 시에 수행된 지하물리탐사 결과가 상이할 경우, 지하물리탐사를 실시하여 지반 및 지질 조건을 수정·보완하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⑤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시 획득한 지하수 자료 및 광역 지하수 흐름을 검토하고, 시공 중에 확인된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이 지하안전영향평가 시 검토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 보완조사를 통하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 시공 중에 확인된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이 지하안전영향평가 시 검토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법」 제5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하천법」 제22조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넷) 등의 기존 관측망 자료를 활용하고, 주변 계측 자료를 분석하여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 검토한다.

⑥ 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및 이행여부 검토

가)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시공현장의 계측계획,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 등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나) 지하안전확보방안이 시공 시 성실하게 이행되었는지 조사한다.

⑦ 지반안전성 검토

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시 수행한 지반안전성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시공 중에 확인된 지반안전성이 지하안전영향평가 시 검토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공 중 계측을 수행하고, 측정한 자료를 검토하여 정량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계측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현 상태 및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측하고 분석한다.

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석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학적 해석을 수행하여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다.

5. 용역 성과품 제출

본 과업의 성과품은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 분기별 1회작성, 년단위 종합보고서 제출
- 기타 관련자료(필요시) : 1식
- 모든 성과품 파일 : 1식 (CD 또는 USB 등 전산매체 포함)

※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5.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5.1 과업 수행 조직도

사업책임기술자		
성명	소속	기술등급
[redacted]	삼보기술단	특급기술자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삼보기술단 (1, 5공구)		
성명	직급	기술등급 (자격증)
[redacted]	부사장	특 급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전무	특 급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상무	특 급 (응용지질기사)
	이사	중 급 (화약류관리기사)
	이사	특 급 (토목기사)
	부장	중 급 (-)
	차장	고 급 (토목기사)
	차장	초 급 (-)
	과장	고 급 (토목기사)

[redacted] (2, 3, 4공구)		
성명	직급	기술등급 (자격증)
[redacted]	부사장	특 급 (토질및기초 기술사)
	전무	특 급 (토목기사)
	상무	고 급 (-)
	이사	특 급 (토목기사)
	부장	중 급 (-)
	대리	중 급 (토목기사)
	대리	초 급 (-)
	전무	특 급 (토목기사)
	이사	특 급 (토목기사)

7.터널공 하도급 계약서 (도양기업)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표지)

※ 계 약 번 호 : 2021-C-S-0587

1. 발 주 자 : 넥스트레인 주식회사

○도급공사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2공구 - E00166CA

2. 하도급공사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2공구 터널공

○하도급공사 등록업종 : 토공/철콘

3. 공 사 장 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9-10

4. 공 사 기 간 : 착공 2021년 07월 20일
준공 2025년 04월 09일

5. 계 약 금 액 : 일금 구백구십팔억삼천일백육십만원정(₩ 99,831,600,000)

○공급가액 : 일금 구백칠억오천육백만원정(₩ 90,756,000,000)

[노무비 : 일금 일백삼십사억오천오십만이천일백구십팔원정(₩ 13,450,502,198)]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과세분 100%] : 일금 구백칠억오천육백만원정(₩ 90,756,000,000)

[면세분 0%] : 일금 원정(₩ 0)

○부가가치세 : 일금 구십억칠천오백육십만원정(₩ 9,075,600,000)

※ 변경 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일금 원정(₩ 0)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금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한하며 그외 대상은 당사 대금지급기준에 의함)

(1) (1) 월 (1) 회

(2)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100%, 어음 %, 어음대체결재수단 %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 지급. 지급 받은 어음 등의 지급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 등을 교부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도 첨부

8.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일금 구십구억팔천삼백일십육만원정(₩ 9,983,160,000)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함

10. 하자담보책임

가.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5)%

나. 하자보수보증금 : 일금 사십구억구천일백오십팔만원정(₩ 4,991,580,000)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 완료일(세금계산서일)로 부터 120 개월

11. 지체상금률 : 계약금액의 (0.10)%/일

12. 지연이자율

ㅇ 공정위 고시 지연이자율을 우선 적용하되, 발생시점 기준일로서 적용

13.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 금 액 : 1사고당 2억원, 1인당 1억원 한도(피보험자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공동명의)

○ 기 간 : 계약기간과 동일

14. 이행(지급)보증

○ 보증금액 : 일금 원정(₩ 0)

○ 보증기간 :

15. 철근(지급)보증

○ 보증금액 : 일금 원정(₩ 0)

○ 보증기간 :

양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설계도()장, 시방서()책에 따라 이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1년 07월 20일

원사업자

상　　호 : (주)포스코건설-본사
전화번호 : 032-748-2114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대 표 자 : [redacted]
사업자(법인)번호 : [redacted]

수급사업자

상　　호 : 도양기업(주)
전화번호 : 031-713-9033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64, 3층(학동)
대 표 자 : [redacted]
사업자(법인)번호 : [redacted]

본 계약서는 포스코건설 홈페이지(http://www.poscoenc.com) 구매포탈(공사/용역)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전자계약서입니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변경)

※ 계 약 번 호 : 2021-C-S-0587

1. 발 주 자 : 넥스트레인 주식회사

원도급공사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2공구

2. 하도급공사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2공구 터널공

3. 공 사 장 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9-10

4. 공 사 기 간 : 착공 2021년 07월 20일
준공 2025년 04월 09일

5. 계 약 금 액 : 일금 일천일십오억팔천구백사십만원정(₩101,589,400,000)
- 공급가액 : 일금 구백이십삼억오천사백만원정(₩92,354,000,000)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 부가가치세 : 일금 구십이억삼천오백사십만원정(₩9,235,400,000)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0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 (1) 월 (1) 회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100%, 어음 %, 어음대체결재수단 %
다. 설계방법,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내역서 참조

8. 계약보증금 : 일금 일백일억오천팔백구십사만원정(₩10,158,940,000)

9.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5%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120개월

11.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1/1000 × 계약금액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장, 시방서( )책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22년 01월 26일

* 원사업자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상호 : (주)포스코건설-본사

대표이사 : [redacted]

* 수급사업자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64, 3층(학동)

상호 : 도양기업(주)

대표이사 : [redacted]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변경)

※ 계 약 번 호 : 2021-C-S-0587

1. 발 주 자 : 넥스트레인 주식회사

원도급공사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2공구

2. 하도급공사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2공구 터널공

3. 공 사 장 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9-10

4. 공 사 기 간 : 착공 2021년 07월 20일
준공 2025년 04월 09일

5. 계 약 금 액 : 일금 일천육십일억팔천삼백만원정(₩106,183,000,000)
- 공급가액 : 일금 구백육십오억삼천만원정(₩96,530,000,000)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 부가가치세 : 일금 구십육억오천삼백만원정(₩9,653,000,000)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0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 (1) 월 (1) 회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100%, 어음 %, 어음대체결재수단 %
다. 설계방법,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내역서 참조

8. 계약보증금 : 일금 일백육억일천팔백삼십만원정(₩10,618,300,000)

9.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5%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120개월

11.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1/1000 × 계약금액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장, 시방서( )책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23년 01월 25일

* 원사업자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

상호 : (주)포스코건설-본사

대표이사 : [redacted]

* 수급사업자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64, 3층(학동)

상호 : 도양기업(주)

대표이사 : [redacted]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변경)

※ 계 약 번 호 : 2021-C-S-0587

1. 발 주 자 : 넥스트레인 주식회사

원도급공사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2공구

2. 하도급공사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2공구 터널공

3. 공 사 장 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9-10

4. 공 사 기 간 : 착공 2021년 07월 20일
준공 2025년 04월 09일

5. 계 약 금 액 : 일금 일천칠십억일천육백팔십만원정(₩107,016,800,000)
- 공급가액 : 일금 구백칠십이억팔천팔백만원정(₩97,288,000,000)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 부가가치세 : 일금 구십칠억이천팔백팔십만원정(₩9,728,800,000)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0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 (1) 월 (1) 회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100%, 어음 %, 어음대체결재수단 %
다. 설계방법,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내역서 참조

8. 계약보증금 : 일금 일백칠억일백육십팔만원정(₩10,701,680,000)

9.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5%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120개월

11.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1/1000 × 계약금액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장, 시방서( )책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23년 04월 25일

* 원사업자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

상호 : (주)포스코이앤씨-본사

대표이사 : [redacted]

* 수급사업자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64, 3층(학동)

상호 : 도양기업(주)

대표이사 : [redacted]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표지)

※ 계 약 번 호 : 2021-C-S-0587

1. 발 주 자 : 넥스트레인 주식회사

ㅇ 도급공사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2공구 - E00166CA

2. 하도급공사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2공구 터널공

ㅇ 하도급공사 등록업종 : 토공/철콘

3. 공 사 장 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9-10

4. 공 사 기 간 : 착공 2021년 07월 20일

준공 2025년 04월 09일

5. 계 약 금 액 : 일금 일천칠십팔억육천팔백이십만원정(₩ 107,868,200,000)

ㅇ공급가액 : 일금 구백팔십억육천이백만원정(₩ 98,062,000,000)

임 금 : 일금 일백삼십사억육백칠십팔만육천일백삼십삼원정(₩ 13,406,786,13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임금

[과세분 100%] : 일금 구백팔십억육천이백만원정(₩ 98,062,000,000)

[면세분 0%] : (₩ 0)

ㅇ부가가치세 : 일금 구십팔억육백이십만원정(₩ 9,806,200,000)

※ 변경 전 계약금액 :

6. 대금의 지급

본 계약서는 포스코이앤씨 홈페이지(http://www.poscoenc.com) > 고객센터 > 파트너포탈 > 구매조달(e-Procurement)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전자계약서입니다.

가. 선급금

ㅇ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 0)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 계약체결 전에 받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 위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

나. 기성금

(1) (1) 월 (1) 회

(2)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또는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100%, 어음 %, 어음대체결재수단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 교부.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 지급

※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지급

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1)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

(2)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도 첨부

8.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을 위한 기준 비율 : 별도 첨부

9. 계약이행보증금

ㅇ 계약금액의 (10)%, 일금 일백칠억팔천육백팔십이만원정(₩ 10,786,820,000)

본 계약서는 포스코이앤씨 홈페이지(http://www.poscoenc.com) > 고객센터 > 파트너포탈 > 구매조달(e-Procurement)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전자계약서입니다.

1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ㅇ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함

11. 하자담보책임

가.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5)%

나. 하자보수보증금 : 일금 오십삼억구천삼백사십일만원정(₩ 5,393,410,000)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 완료일(세금계산서일)로부터 120 개월

12. 지체상금요율 : 계약금액의 (0.1)%/일

13. 지연이자율

가. 지연이자율(지연배상금) : 연 ( )%

※ 하도급대금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급기한을 지나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연이자율

- 위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이하 '약정 지연이자요율')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이하 '법정 지연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 법정 지연이자율

- 약정 지연이자요율이 법정 지연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 약정 지연이자요율

나. 기타 지연이자요율 : 연 ( )%

※ 하도급대금을 약정한 지급기한 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급기한 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연이자율 등을 포함

14. 인지세액 및 부담비율

가. 인지세액

나. 부담비율 : 원사업자 ( )%, 수급사업자 ( )%

.※ 인지세액 부담비율을 약정할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부담비율을 50% 초과하지 않음

본 계약서는 포스코이앤씨 홈페이지(http://www.poscoenc.com) > 고객센터 > 파트너포탈 > 구매조달(e-Procurement)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전자계약서입니다.

15.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가. 연동제 적용대상 없음 ( )

나. 적용함 : (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다. 일부 적용함 : (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

라. 전부 적용하지 않음 : (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

16.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ㅇ 금액 : 1사고당 2억원, 1인당 1억원 한도(피보험자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공동명의)

ㅇ 기간 : 계약기간과 동일

17. 이행(지급)보증

ㅇ 보증금액 : (₩ 0)

ㅇ 보증기간 :

18. 철근(지급)보증

ㅇ 보증금액 : (₩ 0)

ㅇ 보증기간 :

본 계약서는 포스코이앤씨 홈페이지(http://www.poscoenc.com) > 고객센터 > 파트너포탈 >
구매조달(e-Procurement)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전자계약서입니다.

----------(이하 '원사업자')와 ----------(이하 '수급사업자')는 위 내용과 별첨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설계서, 산출(공사)내역서 등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4년 08월 01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주)포스코이앤씨-본사	상호 또는 명칭 : 도양기업(주)
전화번호 : 032-748-2114	전화번호 : 031-729-0052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64, 3층(학동), 3층
대표자 성명 : [redacted]	대표자 성명 : [redacted]
사업자(법인)번호 : [redacted]	사업자(법인)번호 : [redacted]

본 계약서는 포스코이앤씨 홈페이지(http://www.poscoenc.com) > 고객센터 > 파트너포탈 > 구매조달(e-Procurement)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전자계약서입니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표지)

※ 계 약 번 호 : 2021-C-S-0587

1. 발 주 자 : 넥스트레인 주식회사

ㅇ 도급공사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2공구 - E00166CA

2. 하도급공사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2공구 터널공

ㅇ 하도급공사 등록업종 : 토공/철콘

3. 공 사 장 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9-10

4. 공 사 기 간 : 착공 2021년 07월 20일

준공 2025년 04월 09일

5. 계 약 금 액 : 일금 일천일백팔억사백일십만원정(₩ 110,804,100,000)

ㅇ공급가액 : 일금 일천칠억삼천일백만원정(₩ 100,731,000,000)

임 금 : 일금 일백삼십사억육백칠십팔만육천일백삼십삼원정(₩ 13,406,786,13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임금

[과세분 100%] : 일금 일천칠억삼천일백만원정(₩ 100,731,000,000)

[면세분 0%] : (₩ 0)

ㅇ부가가치세 : 일금 일백억칠천삼백일십만원정(₩ 10,073,100,000)

※ 변경 전 계약금액 :

6. 대금의 지급

본 계약서는 포스코이앤씨 홈페이지(http://www.poscoenc.com) > 고객센터 > 파트너포탈 > 구매조달(e-Procurement)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전자계약서입니다.

가. 선급금

ㅇ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 0)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 계약체결 전에 받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 위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

나. 기성금

(1) (1) 월 (1) 회

(2)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또는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100%, 어음 %, 어음대체결재수단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 교부.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 지급

※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지급

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1)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

(2)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도 첨부

8.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을 위한 기준 비율 : 별도 첨부

9. 계약이행보증금

ㅇ 계약금액의 (10)%, 일금 일백일십억팔천사십일만원정(₩ 11,080,410,000)

본 계약서는 포스코이앤씨 홈페이지(http://www.poscoenc.com) > 고객센터 > 파트너포탈 > 구매조달(e-Procurement)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전자계약서입니다.

1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ㅇ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함

11. 하자담보책임

가.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5)%

나. 하자보수보증금 : 일금 오십오억사천이십만오천원정(₩ 5,540,205,000)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 완료일(세금계산서일)로부터 120 개월

12. 지체상금요율 : 계약금액의 (0.1)%/일

13. 지연이자율

가. 지연이자율(지연배상금) : 연 ( )%

※ 하도급대금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급기한을 지나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연이자율

- 위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이하 '약정 지연이자요율')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이하 '법정 지연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 법정 지연이자율

- 약정 지연이자요율이 법정 지연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 약정 지연이자요율

나. 기타 지연이자요율 : 연 ( )%

※ 하도급대금을 약정한 지급기한 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급기한 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연이자율 등을 포함

14. 인지세액 및 부담비율

가. 인지세액

나. 부담비율 : 원사업자 ( )%, 수급사업자 ( )%

.※ 인지세액 부담비율을 약정할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부담비율을 50% 초과하지 않음

본 계약서는 포스코이앤씨 홈페이지(http://www.poscoenc.com) > 고객센터 > 파트너포탈 > 구매조달(e-Procurement)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전자계약서입니다.

15.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가. 연동제 적용대상 없음 ( )

나. 적용함 : (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다. 일부 적용함 : (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및【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

라. 전부 적용하지 않음 : (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

16.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ㅇ 금액 : 1사고당 2억원, 1인당 1억원 한도(피보험자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공동명의)

ㅇ 기간 : 계약기간과 동일

17. 이행(지급)보증

ㅇ 보증금액 : (₩ 0)

ㅇ 보증기간 :

18. 철근(지급)보증

ㅇ 보증금액 : (₩ 0)

ㅇ 보증기간 :

본 계약서는 포스코이앤씨 홈페이지(http://www.poscoenc.com) > 고객센터 > 파트너포탈 >
구매조달(e-Procurement)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전자계약서입니다.

----------(이하 '원사업자')와 ----------(이하 '수급사업자')는 위 내용과 별첨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설계서, 산출(공사)내역서 등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4년 10월 17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주)포스코이앤씨-본사	상호 또는 명칭 : 도양기업(주)
전화번호 : 032-748-2114	전화번호 : 031-729-0052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64, 3층(학동), 3층
대표자 성명 : [redacted]	대표자 성명 : [redacted]
사업자(법인)번호 : [redacted]	사업자(법인)번호 : [redacted]

본 계약서는 포스코이앤씨 홈페이지(http://www.poscoenc.com) > 고객센터 > 파트너포탈 > 구매조달(e-Procurement)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전자계약서입니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표지)

※ 계 약 번 호 : 2021-C-S-0587

1. 발 주 자 : 넥스트레인 주식회사

ㅇ 도급공사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2공구 - E00166CA

2. 하도급공사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2공구 터널공

ㅇ 하도급공사 등록업종 : 토공/철콘

3. 공 사 장 소 : 경기 광명시 일직동 9-10

4. 공 사 기 간 : 착공 2021년 07월 20일

준공 2026년 12월 31일

5. 계 약 금 액 : 일금 일천일백팔억사백일십만원정(₩ 110,804,100,000)

ㅇ공급가액 : 일금 일천칠억삼천일백만원정(₩ 100,731,000,000)

임 금 : 일금 일백삼십사억육백칠십팔만육천일백삼십삼원정(₩ 13,406,786,13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임금

[과세분 100%] : 일금 일천칠억삼천일백만원정(₩ 100,731,000,000)

[면세분 0%] : (₩ 0)

ㅇ부가가치세 : 일금 일백억칠천삼백일십만원정(₩ 10,073,100,000)

※ 변경 전 계약금액 :

6. 대금의 지급

본 계약서는 포스코이앤씨 홈페이지(http://www.poscoenc.com) > 고객센터 > 파트너포탈 > 구매조달(e-Procurement)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전자계약서입니다.

가. 선급금

ㅇ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 0)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 계약체결 전에 받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 위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

나. 기성금

(1) (1) 월 (1) 회

(2)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또는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100%, 어음 %, 어음대체결재수단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 교부.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 지급

※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지급

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1)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

(2)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도 첨부

8.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을 위한 기준 비율 : 별도 첨부

9. 계약이행보증금

ㅇ 계약금액의 (10)%, 일금 일백일십억팔천사십일만원정(₩ 11,080,410,000)

본 계약서는 포스코이앤씨 홈페이지(http://www.poscoenc.com) > 고객센터 > 파트너포탈 > 구매조달(e-Procurement)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전자계약서입니다.

1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ㅇ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함

11. 하자담보책임

가.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5)%

나. 하자보수보증금 : 일금 오십오억사천이십만오천원정(₩ 5,540,205,000)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 완료일(세금계산서일)로부터 120 개월

12. 지체상금요율 : 계약금액의 (0.1)%/일

13. 지연이자율

가. 지연이자율(지연배상금) : 연 ( )%

※ 하도급대금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급기한을 지나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연이자율

- 위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이하 '약정 지연이자요율')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이하 '법정 지연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 법정 지연이자율

- 약정 지연이자요율이 법정 지연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 약정 지연이자요율

나. 기타 지연이자요율 : 연 ( )%

※ 하도급대금을 약정한 지급기한 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급기한 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연이자율 등을 포함

14. 인지세액 및 부담비율

가. 인지세액

나. 부담비율 : 원사업자 ( )%, 수급사업자 ( )%

.※ 인지세액 부담비율을 약정할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부담비율을 50% 초과하지 않음

본 계약서는 포스코이앤씨 홈페이지(http://www.poscoenc.com) > 고객센터 > 파트너포탈 > 구매조달(e-Procurement)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전자계약서입니다.

15.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가. 연동제 적용대상 없음 ( )

나. 적용함 : (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다. 일부 적용함 : (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및【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

라. 전부 적용하지 않음 : (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

16.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ㅇ 금액 : 1사고당 2억원, 1인당 1억원 한도(피보험자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공동명의)

ㅇ 기간 : 계약기간과 동일

17. 이행(지급)보증

ㅇ 보증금액 : (₩ 0)

ㅇ 보증기간 :

18. 철근(지급)보증

ㅇ 보증금액 : (₩ 0)

ㅇ 보증기간 :

본 계약서는 포스코이앤씨 홈페이지(http://www.poscoenc.com) > 고객센터 > 파트너포탈 >
구매조달(e-Procurement)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전자계약서입니다.

----------(이하 '원사업자')와 ----------(이하 '수급사업자')는 위 내용과 별첨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설계서, 산출(공사)내역서 등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5년 02월 04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주)포스코이앤씨-본사	상호 또는 명칭 : 도양기업(주)
전화번호 : 032-748-2114	전화번호 : 031-729-0052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64, 3층(학동), 3층
대표자 성명 : [redacted]	대표자 성명 : [redacted]
사업자(법인)번호 : [redacted]	사업자(법인)번호 : [redacted]

본 계약서는 포스코이앤씨 홈페이지(http://www.poscoenc.com) > 고객센터 > 파트너포탈 > 구매조달(e-Procurement)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전자계약서입니다.

8. 계측 하도급 계약서(이제이텍)

용 역 계 약 서

※ 계 약 번 호 : 2021-T-S-0319

1. 발 주 자 : 넥스트레인 주식회사
   원도급공사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2공구 - E00166CA
2. 계 약 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2공구 계측관리(터널)
3. 수 행 장 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9-10
4. 계 약 기 간 : 착공 2021년 11월 15일 / 준공 2025년 04월 09일 (41) 개월
5. 계 약 금 액 : 일금 일십칠억이천구백이십만원정(₩ 1,729,200,000)
   ○공급가액 : 일금 일십오억칠천이백만원정(₩ 1,572,000,000)(노무비: ₩ 0)

   - 과세분 ₩ 1,572,000,000(100%)
   - 면세분 ₩ 0(0%)

   ○부가가치세 : 일금 일억오천칠백이십만원정(₩ 157,200,000)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계약금액의 0 % (₩ 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시, 선급금 지급규정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 (1) (1) 월 (1) 회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현금100%, 어음 %, 어음대체결재수단 %)

   다. 설계방법,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하도급법적용시)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라. 대금지불조건 : 원사업자의 대금지불조건에 의한다

7.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 172,920,000)
   - 기간 : 2021년 11월 15일 ~ 2025년 4월 9일
8. 근로자재해보상보험
   - 금액 : 해당사항 없음(피보험자: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공동명의)
   - 기간 : 계약기간과 동일
9.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0% (₩ 0)
   -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 완료일(세금계산서일)로 부터 0 개월
10.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2.50/1000 × 계약금액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용역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구입사양서(또는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21년 11월 15일

* 원사업자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상호 : (주)포스코건설-본사

대표이사 : [redacted]

* 수급사업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33번길 10(구미동)

상호 : (주)이제이텍

대표이사 : [redacted]

본 계약서는 포스코건설 홈페이지(http://www.poscoenc.com) 구매포탈(공사/용역)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전자계약서입니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변경)

※ 계 약 번 호 : 2021-T-S-0319

1. 발 주 자 : 넥스트레인 주식회사

원도급공사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2공구

2. 하도급공사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2공구 계측관리(터널)

3. 공 사 장 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9-10

4. 공 사 기 간 : 착공 2021년 11월 15일
준공 2025년 04월 09일

5. 계 약 금 액 : 일금 일십팔억육백이십만원정(₩1,806,200,000)
- 공급가액 : 일금 일십육억사천이백만원정(₩1,642,000,000)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 부가가치세 : 일금 일억육천사백이십만원정(₩164,200,000)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0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 (1) 월 (1) 회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100%, 어음 %, 어음대체결재수단 %
다. 설계방법,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내역서 참조

8. 계약보증금 : 일금 일억팔천육십이만원정(₩180,620,000)

9.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0%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0개월

11.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2.50/1000 × 계약금액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장, 시방서( )책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23년 01월 25일

* 원사업자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

상호 : (주)포스코건설-본사

대표이사 : [redacted]

* 수급사업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33번길 10(구미동)

상호 : (주)이제이텍

대표이사 : [redacted]

posco 포스코건설	과업지시서	결 재	CAM	CE	PM

■ 공 사 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제5-2공구

■ 공 종 명 : [G204] 계측관리(터널)

목 차

1. 과업개요

2. 계약기간

3. 계약조건

4. 과업범위

5. 특기사항

2021.09.

포스코건설

4.3.15 기타사항

- 용역수행 중 타 공사 및 용역과 동시에 진행될 시 혹은 공종 간 간섭사항 발생 시 원활한 공정진행 및 품질, 안전, 환경 등에 대하여 관련 업체 간 충분한 사전 협의 후에 인원, 장비, 자재 등의 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원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들과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 중 작성한 자료 및 용역 성과품 소유권(지적재산권 포함)은 "원사업자"에 종속되며, "원사업자"의 허가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사전동의 없이 이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수급사업자"는 용역수행 중 취득한 "원사업자"의 설계도서 자료 및 보고서를 제3자에게 공표하거나 발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된 모든 자료는 용역 수행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한다.

4.4 계측 조직 및 인원 구성

4.4.1 "수급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 수행을 위한 인력운영계획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최소인원 투입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며, 동시에 본 용역에 적합한 기술자를 선임 후 선임계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원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본공사 공정진행에 따라 공정Cycle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최소인원 외에 필요시 추가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4.4.2 "수급사업자"는 공정과 연계하여 원활한 계측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의 책임에 의한 계측지연으로 공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4.4.3 "수급사업자"는 주야간 상주하면서 Face Mapping이 가능한 터널공사 참여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막장 관찰 전문기술자는 터널 막장도와 종단도 및 막장관찰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총괄책임기술자(관련 기술자격 보유)는 Mapping 결과에 대해 전방 지질예측, 지반분석, Mapping 및 계측결과의 종합분석, 대책공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4.4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터널 암판정 진행 시 Face Mapping(RMR, 사진)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상주중인 특급기술자는 암판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4.4.5 "수급사업자"는 총괄책임기술자를 1인 배치하여야 하며, 총괄책임기술자는 현장내 제반 계측 업무를 총괄하는 특급기술자여야 한다. 또한 총괄책임기술자는 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이탈시에는 적정 대체인력을 일정기간에 한정하여 지정하는 이탈계 공문을 제출하고 "원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이후 이탈하여야 한다.

4.4.6 상주 업무의 개시시점은 계측기의 설치시점이 아닌 본격적인 굴착 공사시(변위 등 발생 전)이며, 정확한 투입일정은 "원사업자"의 공사팀 및 품질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해당 인원 미투입시 또는 허위작성시 당사 제재기준(입찰제한 등)에 따라

조치한다.

4.4.7 투입된 계측인원에 대하여 타현장 겸임을 할 수 없으며, 사전에 승인된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전담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상주/파견기술자는 근무 7일 이내에 4대보험가입증명서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경력증명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수급사업자" 회사 소속임을 증명하여야 한다.(상주인원 겸직불가)

4.4.8 과업 추진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공정 협의에 따라 투입 인원수 및 투입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구간별/업무별 상주인원 교차 이동 조정은 가능하나 예정공정표의 전체 투입인원은 준수하여야 한다.

4.4.9 계약기간 연장, 현장여건 변경 등으로 상세내역서 기준 전체 투입인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사전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추가인원 투입계획을 승인 받아야 하며, 승인된 추가인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산하여 계약변경 한다.

4.4.10 계측 기술자 등급/경력표

구분	기술등급	경력	비고
터널 분야	특급	계측(토질/지질)분야 10년 이상근무	관련분야 기사자격소지자
	고급	계측(토질/지질)분야 7년 이상근무	관련분야 기사자격소지자
	중급	계측(토질/지질)분야 5년 이상근무	-
	초급	계측(토질/지질)분야 2년 이상근무	-
가시설 분야	고급	계측(토질/지질)분야 7년 이상근무	관련분야 기사자격소지자
	중급	계측(토질/지질)분야 5년 이상근무	-

4.5. 자재 및 공기구/장비 지원범위

4.5.1 "원사업자" 지급자재 : 없음

4.5.2 공기구/장비 : "원사업자" 지원 없음

4.6 입찰조건

4.6.1 "수급사업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된 제반 건설 관련법, 표준시방서, 시공기준, 서울지하철 계측관리요령(최신판) 및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되는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과업지시서,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 제규정, 절차, 지침, 작업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관련법규가 상이할 시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6.2 "수급사업자"는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토질 및 기초) 신고를 득해야 하며,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전 까지 관련 면허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6.3 "수급사업자"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조사비, 재료비, 업무 추진비, 노무비 등 모든 비용을 "측정 및 보고서 작성" 항목에 반영하여 입찰한다.

4.6.4 과업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부속자재는 "수급사업자"가 조달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가 조달하는 자재에 대한 자재비 및 운반비를 견적에 포함하여야 한다.

4.6.5 과업수행 중 타공사 및 용역과 동시에 진행될 시 혹은 공종 간 간섭사항 발생 시 원활한 공정진행 및 품질, 안전, 환경 등에 대하여 관련 업체 간 충분한 사전 협의 후에 인원, 장비, 자재 등의 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4.6.6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시 환경유해물질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수급사업자"의 과실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민원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4.6.7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사전동의 없이 이 용역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6.8 과업수행 중 타 공종 및 기존 시설물을 파손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즉시 원상 복구한다.

4.6.9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반 안전사고 및 지적재산권 등의 제반 분쟁으로 인해 "원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4.6.10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원사업자"의 설계도서 자료 및 보고서를 제3자에게 공표하거나 발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된 모든 자료는 과업수행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한다.

4.6.11 Face Mapping(막장관찰 대장, 막장관찰 스케치, 막장관찰 사진대지)은 "상주계측비" 내역에 포함하여 입찰한다.

4.6.12 "수급사업자"는 계측기 설치를 위한 장비비와 자료전송을 위한 인터넷 및 통신망 구축비용을 해당내역에 포함하여 입찰한다.

4.6.13 "수급사업자"는 예정공정표의 인력 투입기준에 의거 투입되는 모든 상주인원에 대한 인건비 전체를 "상주계측비"에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상주계측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4.6.14 계측업무 수행 시 아래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견적한다.

- 계측기기 설치, 계측관리, 계측결과/분석 보고서 제출
- 사무실 임대, 숙소 임대, 식대, 차량, 소모품, 비품 등 부대비용 일체
- 지하 및 지상 지장물 확인 및 보호조치, 폐공처리
- 안전관리, 안전시설물,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일체, 안전시설, 안전장구 등 일체